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

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지원사업 및 가정양육 · 상담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국가수준의 정책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1일

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

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
채용분야	인원	주요 업무	지원 자격
행정원	1명	-센터 운영 예산 및 회계 -센터 인사노무 운영관리 -기타 행정업무 -그 외 육이종합지원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(시설관리)	- [필수]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- [필수] 행정, 회계, 인사, 노무 관련 업무 (예: 사회보험, 연말정산, 세무관리 등) 경력 3년 이상인 자 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- 걸음마넷,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가능자

2. 근로조건 및 보수기준

구분	채용형태	보수기준	근무지
정규직	근무시간- 주 5일 9:00~18:00 (월 ~ 금 근무, 토·일 휴무)	- 내부규정 적용(공무원 8급 상당) - 4대 보험 적용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	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

3.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

전형구분	전형일정	비고
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	2021. 12. 2.(목) ~ 2021. 12. 17.(금)	제출서류: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1부)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1. 12. 17.(금)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면접전형	2021. 12. 20.(월)	구술면접
최종 합격자 발표	2021. 12. 21.(화)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
근무시작일	2022. 1. 3.(월)	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[※]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(2021. 12. 1.) 기준입니다.

4.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

지원시 제출서류	면접시 제출서류(면접대상자에 한함)
 ○ 입사지원서(사진반명함판) (반드시 최근 3개월이내 사진으로, 포토샵 금지) ○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○ 자기소개서 	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○ 관련 자격증 사본 1부○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(관련증빙서류 포함) 1부

- 전형방법: 1차 서류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접수(yeosuchildcare@daum.net) ※이메일 제목을 '채용분야-성명'로 작성 (예시)'행정원' - 홍길동'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이메일)※접수는 마감일시(2021. 12. 17. 16:00) 도착 분까지 유효함

4. 기타사항

-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<u>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</u> <u>채용이 취소됩니다.</u>
- O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O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O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O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문의처 :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김영미 ☎061-692-0756

※참고: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-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「아동복지법」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)「영유아보육법」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- 3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 (제48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